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제1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대상기관 : 속초시청 (17개 실과)

나. 감사기간 : '92. 12. 2 ~ 12. 4 (3일간)

다. 감사장소 : 시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반원

. 위원장 : 최창영 의원

. 간사 : 전상익 의원

. 위원 : 조승남, 윤종구, 장현영, 정영태, 임호성,

여석창, 이태근, 한영환 의원 (8명)

2. 주요감사내용

대상실과	감 사 내 용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도 풀보조금 집행상황 . '92년도 지방채무현황 . '92년도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 '92 전도자금 관리상황 . '92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민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민원 처리현황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 홍보관리비 집행상황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 통장 임명상황
새마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사업 추진상황 . 체육진흥사업 . 동네 체육시설 설치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지방세 채납액 징수대책 . 법인 비업무용 토지과세 현황
회 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난방용 배관 교체공사 . '92 공유재산 취득 및 사용료 징수현황 . 공사계약상황
사 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현황 . 불우이웃돕기 기탁금 활용상황

대상실과	감 사 내 용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공동할복장 운영 및 추가공사 . 오. 폐수 배출 대상업체 관리현황 . 영금정 화장실 공사 .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및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승차권 관리현황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상황 . 농공단지 조성사업시 사방지 훼손 현황
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호동 7통 하수도 사업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로 가로수 조성사업 . 솔잎혹파리 방제상황 . 각종 원상복구사업 현황 . 시유지 임야 임대현황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로 인도시설공사 .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 지하수 사용자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 . 하수특별회계 집행상황 . 각종사업 원상복구상황

대상실과	감사 내용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금정 및 미시로 재공사 현황 .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 도시계획이주정착금 지급상황 .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 주택융자금 회수관리 현황 .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 건축허가후 미준공 처리현황 . 임대 APT 분양상황 . 각종사업 원상복구상황
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 도문동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교통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학동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 견인차량 운영현황

3.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1) 시의회 청사 보일러 배관공사 비용 이중 투자

시의회 청사는 '89. 6. 19. 공사비 961백만원을 투자하여 착공, '90. 9. 21. 준공하였으나, 시청사 (의회청사 포함) 난방용 배관 라인 교체공사를 총공사비 85,000천원을 투자하여 '92. 8. 31. 착공하므로 인해 의회청사로 준공된지 2년여만에 난방용 배관을 다시 교체하므로서 시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공사 설계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

2) '92년도 시장, 동장 포괄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예산계상 지양

'92년도 포괄사업비는 총 149건, 885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포괄적이며, 개략적인 예산에 계상을 지양할 것

3)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개선

'92년도 풀보조금 총 200,00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보훈단체 사업운영비 보조외 52건, 130,632천원을 집행하고 69,368천원이 집행잔액인 바, 앞으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산발적 요구에 의한 지원은 지양할 것

4)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지역의 각종물가 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92년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외 6회에 걸쳐 운영하여 왔지만 정작 물가안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 물가대책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5) 가로수 피해 원상복구사업 지원

'92년도 가로수 피해 변상금 총 35건, 8,180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당해년도 가로수 피해에 대하여는

식수시기로 보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구가 가능함에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복구하므로 인해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복구 가능분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복구하도록 조치할 것

나. 처리요구사항

1)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92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1,317건에 219,882천원을 부과하여 1,224건에 186,620천원을 징수함으로써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88%, 도유재산 임대료는 96%, 시유재산 임대료를 80%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징수실적이 가장 부진한 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

2) 관광로변 가로수 이식

관광로변 (설악동 진입로, 노학동 진입로) 벗나무 가로수는 왕벗나무와 겹벗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개화 시차로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관광로변에 기 식재한 벗나무를 개화시기 가 같은 수종별로 식재하여 관광로 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

3) 영금정 공중화장실 공사 조기완공

동명동 (영금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영금정 유원지 관광 탐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1,500 천원을 투입하여 '92. 5. 15. 착공 '92. 8. 12. 완공예정으로 시공한 바 '92. 7. 25. 화장실 위치가 도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어 '92. 10. 7.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 재개하여 행정감사 당일까지 완공을 하지 못한 바 조속 준공하여 관광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것

4) 장사동 위생매립장 처리대책 강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사동 위생매립장은 '91. 9. 25 일부터 1년 2개월여간 약 9만톤의 처리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 처리용량이 한계를 초과하여 그로 인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대포동 위생매립장 사용시까지 이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대포동 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준공되도록 조치할 것

5) 청호동 7통 하수도사업 공사에 대한 배수처리

· '92. 8. 13 ~ '92. 10. 14일까지 총공사비 14,450천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22m에 달하는 하수도공사를 한 바, 배구가 원활치 못하여 인근지역의 침수 및 하수의 역류현상으로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6) 주택용자금 회수 부진

○ 현 황

· 총 차 입 액	_____	9,340,976천원
- 상환도래액	_____	1,938,489천원
└ 징 수 액	_____	1,756,011천원
└ 체 납 액	_____	182,478천원
- 상환미도래액	_____	7,402,487천원
- 체 납 액	_____	1,060,557천원
└ 원 금	_____	182,478천원
└ 이 자	_____	617,483천원
└ 연체이자	_____	260,596천원

○ 속초시는 1969. 2. 15일부터 '92. 11. 30일까지 사이에 주택은행으로 부터 43회에 걸쳐 9,340,976천원을 차입하여 2,853세대에 주택을 공급한 바, 주택융자금 상환도래액 1,938,489천원중 1,756,011천원을 징수하고 182,478천원이 체납된 바, 원금 182,478천원, 이자 617,483천원, 연체이자 260,596천원으로 총 1,060,557천원이 체납되어 계속 체납될시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징수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

7) 주택융자금에 의한 채권 미확보에 대한 조치

○ 채권 미확보 세대수 _____ 94세대

- . 79 국민주택 _____ 50세대중 13세대
- . 81 금호연립 _____ 50세대
- . 82 동명연립 _____ 20세대
- . 84 수해복구주택 _____ 31세대중 11세대

○ 위 주택 94세대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채권 미확보된 바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당부과

○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배수구역이여야 함에도 일부 농촌 등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음.
기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취소하고 수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반납 조치할 것

9) 시유재산 임대목적 불이행

속초시 노학동 산 297-17번지외 1필지 (임야) 11,620m²를
'91. 3. 19.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조조합장 서동석과 계약한
바 계약신청은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조조합장 서동석으로 신청
하고 계약시는 자연인 서동석과 계약한 바 정정계약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임대계약 제8조 제2항에는 계약후 1년이내 사용목적에
착수 하도록 조건을 부하였으나, '91. 3. 19일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동조합장 서동석과 계약한 것은 9개월여간이나 계약
불이행하였으며 속초시 대포동 산 109-1번지 (임야) 10,512m²는
속초시 금호동 622-239 원학봉과 '91. 7. 23 야생화훼류 시험재배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개월여가 경과한 행정사무
감사 당일까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바 조속 조치 요망

10) 시유재산 관리부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부적정

속초시 대포동 산 122번지 (임야) 186, 150m²는 '92. 4. 23일자로 속초시 대포동 산 14-9번지 (목장용지) 106, 622m²로 등록 전환한 바, 위 재산은 당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오던중 '92. 4. 23일자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된 바, 목장용지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92. 5. 8일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계약함은 부당하므로 변경계약이 요구됨.

11) 시유재산 임대위치및 면적 불분명

속초시 장사동 산 220번지 임야 9, 428m²중 660m²를 속초시 장사동 3통 2반 노춘호와 야생조수 (꿩) 인공사육시설 목적으로 임대 계약한 바, 현지확인에 의하면 임대위치 및 사용면적이 불분명하여 확인 불가하니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사용위치 및 면적을 정확히 확인 조치할 것

다. 건의사항

1) 산업과 지역경제계 직원 증원

지역경제 부분의 업무가 다양해짐으로 해서, 최근 지역경제과 신설 움직임이 다각도로 검토되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 인원으로 업무수행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직원의 증원 요구를 건의함.

2) 속초항내 폐선 처리요망

현재 속초항내에는 폐선이 산재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자연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히 처리조치 요망

3) 청초교, 영랑교 인도 시설

청초교와 영랑교를 설치할 시 인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보행에 지장과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으로 교량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